

#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정 관

제정 : 1966. 10. 18. 보건사회부승인 제 762 호  
개정 : 1981. 12. 28. 보건사회부 승인  
의제 1421-72116 호  
1985. 2. 23. 보건사회부 승인  
의제 31102-24042 호  
1987. 3. 2. 보건사회부 승인  
의제 31205-06757

### 제 1 장 명칭 및 사무소

제 1 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하 본회 ; 영문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국제적 물리의학 지식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회원친목에 관한 사항.
4.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조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구 성

제 2 조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각도에 시·도회를 두며 각 시·도회는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장 회 원

제 4 조 본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및 영구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3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본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물리치료의학의 연구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의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자.
2.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의학계의 공헌이 현저한 국내의 인사로써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영구회원은 입회한지 3년 이상 되는 자로서 당년도 회비 10년분을 선납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자.

1. 물리치료의학과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제 5 조 회원은 대의원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본 회의 회비 및 입회금을 별도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1. 의료논리에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한 자.

### 제 5 장 임원 및 임원선거

제 8 조(임원의 종류) 본 회의는 다음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부회장 3명
- 이 사 15명(회장 및 부회장 포함)
- 감 사 3명

제 9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회무를 처리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임원의 보선 및 승인)

1.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의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선출된 임원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고문)

1. 본 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 6 장 회 의

제 14 조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선출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4/4분기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총회 1개월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사항
5. 회비에 관한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부되는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이사회)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위임된 사항.
3. 정관세칙의 입안개폐.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5.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제 21 조

1.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사무국에는 총무부, 학술부, 재무부, 사업부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무국의 지도 감독
  -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

## 제 7 장 감 사

제 22 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

정부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 제 8 장 재 정

제 23 조 본 회의 재정수입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회비, 입회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4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각 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정예산안의 추가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6 조 본 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및 사업목적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 9 장 보 칙

제 27 조 본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및 처무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부 칙

1. 본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시행 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회 임원 및 고문은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시행세칙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으로 정한다.

#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운 영 규 정

1982. 9. 24. 제정  
1983. 1. 20. 개정  
1987. 3. 2.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정관의 충실을 기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회의 및 기구

제 2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대의원회 의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합의체의 결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3 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4 조(연수위원회)

1) 본 협회는 연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협회 위원들의 보수교육과 신입회원의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한다.

2) 연수위원회는 본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겸하며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수위원의 위촉은 본 협회의 임원을 거친 자들 중에서 회장이 한다.

#### 제 5 조(교육관리위원회)

1) 본 협회의 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의 자격은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각급 대학 물리치료과 학과장으로 한다.

제 6 조(물리치료사가 및 개업관리위원회) 본 협회에서는 물리치료사가의 적정한 산출 및 그 시행을 원활히 하고, 물리치료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가 및 개업관리 위원회를 두며, 그 의장에는 본 협회의 회장이 된다.

제 7 조(회관건립기금위원회) 본 협회는 협회회관 건립기금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본 협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전국 각 지부장은 본 위원회 추진위원이 되고 총무 또는 기획이사가 계획을, 재무이사가 관리를 담당하고, 공보, 학술이사가 홍보를, 복지 및 지구이사가 섭외를 담당한다.

2) 사무국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록 및 기타 재정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대의원 총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위원회의 사업은 회관건립기금의 모금, 축적된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운영,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 및 회관건립계획 등을 포함한다.

4) 본 위원회의 재정의 확립을 위하여 중앙회의 회비 중에서 신입회비, 회관기금 찬조금

및 선거직 임원 공탁금중 잔여액을 본 위원회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 8 조(편집위원회)

- 1) 본 협회는 편집위원회를 두어 월회보 및 회지를 발간한다.
- 2) 본 협회의 회보 및 회지는 그 발간의 시기 및 규모에 대하여 이사회에 결정에 의한다.
- 3)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공보이사가 편집위원장이 된다.
- 4) 편집위원회는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세부 업무만을 담당하고 원고의 심사 등 회보 및 회지의 발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사회에 정한다.

제 9 조(별도기구) 제 2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종 기구는 별도 특별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구분)

- 1) 본 협회의 임원은 임명직 임원과 선거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 가) 선거직 임원 : 회장, 부회장(3인), 감사(3인), 대의원회의장, 직전회장
  - 나) 임명직 임원 : 이사(9인 이내)
- 2) 본 협회의 임명직 임원은 본 협회에 입회하여 5년 이상 경과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선거직 임원은 임명직 임원이나 시·도회장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

제 11 조(보수) 본 협회의 임원 및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는 약간의 활동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 1) 회장 :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직무를 갖는다.
  - 가) 년 1회 이상 각 시·도회를 방문하여 회원간의 우의증진과 부실 시·도회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본 협회 발전에 전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

-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적극 보좌하여 본 협회의 원활한 발전과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 3) 이사 :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회장단과 함께 법원에 등기를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 가) 총무이사 :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각 이사의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나) 재무이사 : 협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수익사업을 담당.
  - 다) 기획이사 : 예산 및 사업의 계획과 협회의 장래계획의 입안·수행을 담당.
  - 라) 학술이사 : 물리치료회지의 발간과 학술대회, 회원연수, 학회 및 교육관리위원회를 담당.
  - 마) 공보이사 : “물리치료” 회보의 발간과대의 홍보 및 섭외를 담당.
  - 바) 복지이사 : 회원의 권리 신장과 복지대책 및 친목활동을 담당.
  - 사) 지구이사 : 담당지역의 시·도회 활동의 원활화와 중앙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 4) 사무국장 : 각 이사들의 담당업무를 지원 및 수행하고, 본회의 모든 사무 및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의 직원을(회장의 명을 받아) 지휘 감독하며 제반업무 실행을 파악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임원이 연속 무단 3회 이상 이사회에 출석치 않을시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해외여행 및 신병으로 인하여 불참시는 차한에 부재 한다.

제 4 장 회 원

제 14 조(회원)

- 1) 회원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행에 소홀

함이 없어야 하며 소속 시·도회(지부·분회) 및 본협회 행사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기가 소속된 지부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연구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15 조(회원자격의 상실)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 회
- 2) 제 명
- 3) 사망 또는 해산
- 4) 면허의 취소 또는 박탈

제 16 조(퇴회) 본 협회를 퇴회코자 하는 회원은 퇴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제명)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시·도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은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출석하여 변호할 수 있다.

-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 2) 본 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3) 회비가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때(중앙회 회비는 당년도 회기말까지 익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부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4) 총회(시·도총회)나 월례회에 연속무단 3회 이상 참석치 아니한 때
- 5) 기타 회원으로 적합치 못하다고 인정된 때

### 제 5 장 임원의 선출

제 18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5명 이내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총 투표권수의 확정
- 3) 선거공보의 발행
- 4) 선거운동의 규제
- 5) 투표의 결과발표 및 개표의 관리
- 6) 당선자의 확정발표
- 7) 기타 전항에 속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 21 조(선거권) 선거권은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 중에서 총회개최 30일 전에 중앙회에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며 총회개최일 현재 본 협회 및 지부회비를 완납치 아니한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2 조(입후보의 제한) 본 협회의 임명직임원이나 시·도회장(단, 1987년도 이전에는 지부장)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선거직임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23 조(입후보 등록서류)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매
- 2) 입후보자 이력서(협회경력포함) 1매
- 3) 명함판 사진 1매
- 4) 입후보 추천서(대의원 5인 이상 추천서명) 1매
- 5) 주민등록등본 1매
- 6) 입후보 소감이나 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5-10매 한)

제 24 조(입후보 등록금)

- 1) 입후보 등록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입후보 등록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입후보 등록금은 본 협회에 귀속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회비와 선거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회관건립기금으로 전입된다.

제 25 조(입후보 자격의 박탈)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입후보가 선거와 관련된 불미한 사태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지되었을 때에

는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의 기회를 가진다.

#### 제 26 조(선거운동기간과 운동방법)

-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이다.
-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의 소개, 소신 및 선거자료를 게재하여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 외에는 입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은 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 27 조(투표와 개표 및 재투표)

- 1) 투표와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 2) 개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 4) 투표결과가 다음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가) 1인을 선출하여야 할 때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나)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제 28 조(참관인) 개표 및 투표결과 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 29 조(당선자의 결정) 본 협회의 선거직 임원의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를 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단 총투표수란 선거일 현재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총수를 말한다.

제 30 조(선거일정) 선거를 원활히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을 정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선거일 50일 전
- 2) 입후보등록 : 선거일 20일 전
- 3) 대의원 등록 및 대의원명부 명의변경 마감 : 선거일 30일전

### 제 6 장 대의원 선거

제 31 조(대의원의 자격과 선출) 대의원은 다음 비율로 각 지부에서 선출한다.

- 1) 대의원에 피선거권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 2) 각 시도회의 대의원선출 기준은 매년 시도회 총회일 현재 시도회에 등록된 회비를 완납한 회원 총수 20명 단위 1명의 비율로 한다.(단 20명 미만일 때는 11명 이상일 때 1명을 더 선출할 수 있다).
- 3) 역대정, 부회장 및 현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4) 당연직 대의원이라 하여도 계속하여 3회 이상 대의원 총회에 참석치 않거나 미납회원일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5) 미납회원은 대의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없다.

#### 제 32 조(대의원회 구성)

- 1)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2) 대의원회의장은 본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와 대의원회간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 3) 대의원회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제 33 조(대의원의 임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34 조(대의원의 등록 및 임기)

- 1) 각 시·도회장은 임원개선이 있을 임시총회 30일 전에 대의원을 선출, 신임장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대의원은 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총회결과를 각 소속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시·도회 설치규정

제 35 조(시·도회설치) 본 협회 정관 제 2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 제 36 조(시·도회의 구성)

- 1) 시·도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부와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7 조(관할구역) 본 협회의 각 시·도회는 정부행정단위와 동일한 구역을 관할한다.

제 38 조(회원의 구성 및 관할)

- 1) 시·도회의 회원의 구성은 관할구역내에 근무처를 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미취업 회원의 경우는 거주지로 한다.
- 2) 시·도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년 2회 정기적으로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변동이 있을 때와 본 협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9 조(시·도회칙의 제정) 시·도회는 시·도회칙을 회원총회에서 작성 통과하여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8 장 감 사

제 40 조(감사의 종류)

-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 2) 정기감사는 회무전반에 대하여
- 3) 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4) 특별감사를 실시함에는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감사의 보고)

- 1) 정기감사는 당해년도 6월 중에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전년도의 감사를 실시한다.
- 2) 감사는 전항의 감사실시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장 회비 및 회비 감면규정

제 42 조(회비) 본 협회 정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 회비, 시·도회비를 협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납기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 43 조(회비면제) 회비납부의 의무를 필해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면제한다.

- 1) 면제기간 : 요양자는 2년, 병역의무자는

제대시까지 회비를 면제하며 기간 중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2) 수속 : 요양자는 의사의 증명서첨부, 군입대자는 소집영장 사본첨부 및 서식 1의 회비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우대 : 만 60세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전액 면제하고 생존기간 중 타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44 조(회비감액)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 반액을 납부할 수 있고 타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 가사 :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가사에 종사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 2) 기타 : 일정서식 1에 회비감액신청서를 각 시·도회를 경유 회장에게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 45 조(벌칙)

- 1) 전항 제 2조 제 3항의 경과를 초과하면 본 정관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2) 전항의 해당회원으로서는 불이행한 자는 본 정관 제 7조의 규제를 받는다.

## 제 10 장 물리치료회보 발간

제 46 조(협회보명칭) 본 협회는 월간으로 회보를 발간하며, 그 명칭을 “물리치료”라 한다.

제 47 조(임원) 협회장은 발행인을, 공보이사는 편집인을 겸한다. 다만, 편집국장은 공보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48 조(협회보기자)

- 1) 발행인은 본 회보를 효율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각 시·도회의 단위로 “협보기자”를 둘 수 있으며 시·도회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2) 전항의 “협보기자”는 관할구역내의 기사를 취재하고 소속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이를 면제한다.

제 49 조(편집위원) 편집인 및 발행인은 본회보의 편집상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약간명의 편



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0 조(회보의 내용)**

- 1) 본 협회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뉴스, 학술, 문예 및 광고를 고루 게재한다.
- 2) 본 협회보는 필요할 때 특집 또는 부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 51 조(윤리)** 본 협회보는 문공부장관의 허가 사항 이외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언론, 자율, 정확,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2 조(광고료)** 광고료는 반드시 관영영수증을 사용하고 징수 불능인 경우에는 게재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 53 조(인쇄 등)** 본 보는 서울시내 인쇄업자로서 발행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인쇄할 수 있다. 단, 도안, 등판 등과 같은 부속작업은 임의업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 54 조(납본)** 편집인은 본보 발행 즉시 문공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임직원의 출장 및 여비**

**제 55 조(출장비)** 출장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구분한다.

- 1) 교통비는 고속버스요금, 또는 국영철도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왕복요금을 지급하고
- 2) 식비는 서울시내 대중음식점 백반대금을 기준으로 산출지급하며
- 3) 숙박비도 아래에 의거 지급한다.

가)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출장지 1급 여관

나) 이사 및 사무국장: 출장지 2급 여관

다) 사무직원: 출장지 3급 여관에 기준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각 항의 임직원과 동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급항에 준한다.

**제 56 조(출장복명)** 출장임직원이 귀회한 때에는 즉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극히 간단한 경우에는 구

두로써 보고할 수 있다.

**제 12 장 상훈규정**

**제 57 조(목적)** 본 협회 회원이나 국내외인으로서 본 협회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상훈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8 조(추천)**

- 1) 본회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 2) 각 시·도회 회장이나 이사가 본 협회 추천할 수 있다.
- 3) 본 협회 회원 30인 이상이나, 대의원 3인 이상의 동의로서 추천할 수 있다.

**제 59 조(심의회)** 심의회는 회장을 제외한 전이 사직으로 구성하며 직전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제 60 조(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로상: 공로상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본회 회원의 복지 및 지위향상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2. 학술상: 학술상은 본회의 학술연구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학술활동이 많은 자에게 수여하며, 등급은 상훈심의회에서 정한다.
- 3. 감사상: 감사상은 본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외부인사나 단체에 수여한다.
- 4. 장기근속상: 본협회 회원으로서 실제로 물리치료 업무나 물리치료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5.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첨가시킬 수 있다.

**부 칙**

- 1. (시행) 이 규정은 198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이 전에 제정된 모든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3. (준용) 본 협회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이나 일반관례에 준한다.